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

발의연월일: 2020. 6. 1

발 의 자:정춘숙·고용진·인재근

김두관・박완주・위성곤

오영훈 • 기동민 • 강훈식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이외에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경범죄로 구분되어 벌금 8만원이 처벌의 전부로,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음.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가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숨거나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여성 사장이 손님인 남성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여성에게 수개월 간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고 수시로 식당에찾아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

따라서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자유로 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보호 조치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누구든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안 제13 조).
- 자.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인적사항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 차.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지원

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유관 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타.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파.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하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임시보호조치 등의 불이행, 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자유와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이하 "주거지등"이라 한다)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보내거나 주거지등 또는

특정한 장소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 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 는 행위
- 바.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 2. "가해자"란 제1호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제1호의 상대방과 그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 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스토킹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2. 스토킹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법률구조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운영

- 5.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6.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다.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

- 제6조(신고 및 현장조사 등) ①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 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의 주거지등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서 신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범죄를 계속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임시보호조치 부과와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경고장을 통한 경고 실시
- 2.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게 제9조제4항의 임시보호조치 요청, 제12조의 신변안전 조치 신청, 제23조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등 피해자 보호규정 및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고지
- 4. 피해자를 제21조에 따른 피해자지원기관에 연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7조(고소에 관한 특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 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제8조(수사기간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신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스토킹범죄에 관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그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임시보호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10조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임시보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변경,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 ② 검사는 가해자가 제10조의 임시보호조치 또는 제23조의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각 유치하고, 직권 또는 사법경 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임시보호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제10조의 임시보호조치 또는 제23조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 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 0조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보

호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긴급임시보호조치결정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보호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보호조치의 청구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긴급임시보호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⑧ 법원이 임시보호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시보호조치) ①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자의 주거지등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 2. 피해자에 대한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 3.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
 - 4. 그 밖에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 각 호의 임시보호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

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가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보호조치 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3호의 임시보호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보호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3호의 임시보호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 ⑦ 가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결 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나 제7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임시보호조치의 집행 등) ①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시보호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해자에게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임시보호조치후 주거지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보호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3. 시간대·동선·횟수 등 피해자 맞춤형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4.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별로 등록·관리, 핫라인 구축
 - 5.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지원
 - 6. 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일시 휴직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 차 안내·보조 실시
 - 7.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판사·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스토킹범죄 피해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 수 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

- 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지9조 및 제15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 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

-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18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 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 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나 피해자의 심리안정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사생활의 보호나 심신 안정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1조(피해자지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등 유관 기관(이를 "피해자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서 피해 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22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23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에 관한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가해 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로 한다. 다만, 스토킹범죄 전담재 판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 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 및 항고·재항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지등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 2. 피해자에 대한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 3.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
 - 4.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제24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 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5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23조제

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 령"으로 본다.

제4장 벌칙

- 제26조(벌칙)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가중요소) ①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

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병과한다.
- ④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 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

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교육
- 2.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⑧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 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9조(임시보호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 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형의 집행유예와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이수명령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3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비밀 누설 금지 위반죄) 제14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개의 스토킹범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